

#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▲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▲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인권존중

사회복지종사자도  
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1. 아름다운 말로 존중해 주세요
2. 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
3. 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

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## 다함께인권존중

우리기관  
인권지킴이

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

어르신과 종사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

#폭언 #폭행 #성희롱예방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## 사회복지종사자인권

우리 가족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.

공감 반말, 욕설, 폭언 등

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 
말아주세요~!

함께 느끼고 공감해요

존중 마주하고 있는

사회복지종사자를 존중해

주세요~! 그 사람도 누군가의

귀한 아들, 딸입니다.

배려

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

아름다운 미소와 배려가

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줍니다,

긍정

종사자에 대한 긍정의

감정을 느낀다면, 그때그때

표현해 주세요~!

"감정노동자보호, 예방이 먼저입니다."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
(사)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 평가지원팀

##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



장기요양 종사자가 돌봄 업무 현장에서  
업무 수행과정 중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, 이웃 등  
이해관계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을 의미 합니다



신체적  
폭력



언어·정서적  
폭력



성적  
폭력



경제적  
폭력